

2019년도 온천종사자교육 재통지

문서번호 : 온협19-401

2019. 10. 07

수 신 : 온천종사자(대표)

온천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·(특)한국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온천종사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며, 사이버교육이나 집합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■ 교육내용

- 교육시간 : 4시간(년1회)
 - 온천법(행안부)2시간, 온천운영(협회)1시간, 공중위생관리(지자체)1시간

■ 사이버(온라인)교육

- 정회원에 한하여 이수 가능 [2019. 7. 8(월) ~ 12. 16(월) 수시]
 - 정회원 : 협회홈페이지에 회원등록하고,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온천종사자

■ 집합교육 : 정회원이 아닌 온천종사자(다음 집합교육 중에서 택1)

구분	일 시	장 소	비 고
1차	'19. 5. 22(수)	대구문화예술회관 [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(성당동)]	완료
2차	'19. 6. 12(수)	광주 518 교육관 대강당 [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78(치평동)]	완료
3차	'19. 9. 18(수)	동래구청 대회의실 [부산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(복천동)]	완료
4차	'19. 10. 30(수)	속초시청 대회의실 [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)]	
5차	'19. 11. 21(목)	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식당산홀 [대전 중구 중앙로 101(선화동)]	
시간	집합교육 당일 14:00~18:00 [4시간]		
교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비 30,000원- 계좌송금 [신한은행 140-009-424040 (특)한국온천협회] • 계좌송금시는 온천명으로 입금(온천명과 상이하게 송금시는 협회로 통보) •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(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) • 정회원은 교육비 면제 		

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



○ 공중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아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.

※ 관련 온천법 : 첨부 참조

온천법



[시행 2018. 4. 19.] [법률 제14795호, 2017. 4. 18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·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온천"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
3. "온천종사자"란 온천을 공중(公衆)의 목욕용이나 음용(飲用)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26조(온천종사자 교육)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,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,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것으로 본다. 다만,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
 2.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3.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·군수가 부과·징수한다.

온천법 시행규칙

[시행 2017. 7. 26] [행정안전부령 제1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제19조(온천종사자 교육)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,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